

스웨덴 신문평의회 정관 및 프레스 옴부즈맨의 업무규정

본지는 외국의 신문평의회제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외국의 신문평의회를 소개하면서 스웨덴신문평의회 정관과 프레스 옴부즈맨의 업무규정을 1986년 여름호에 번역 소개한 바 있다. 이 정관등은 1993년 7월 1일 개정되었으며, 본지는 개정된 정관등을 다시 소개한다.....편집자 주

1. 신문평의회 정관

제 1 조 신문평의회는 언론인의 직업윤리강령과 관련된 불만사건들을 심의한다. 평의회는 직업윤리강령에 대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신문평의회는 정기구독 또는 판매의 방식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공급되는 모든 간행물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 2 조 신문평의회는 프레스 옴부즈맨이 심의를 요구한 사건이나, 프레스 옴부즈맨에게 제출된 신청사건, 또는 신문평의회에 신청된 사건들을 다룰 수 있다. 프레스 옴부즈맨에게 제출한 신청사건 중 그가 기각한 신청사건은, 그 문제가 신청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신청인 자신이 신문평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개인이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조직 그리고 공공단체는 정정이나 반박의 기회를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신문평의회는 위에서 특정한 사항 이외의 신청들을 검토할 수 있다. 평의회는 특정한 신청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평의회는 심의과정이 진행중 일지라도 심의사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할 수 있다. 전면적인 조사의 착수는 평의회업무가 아니다.

제 4 조 평의회는 심의가 제기된 문제에 관해 평의회 의견의 공표할 수 있다. 이러한 공표는 일반 공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조 평의회는 의장과 제 1, 제 2, 제 3 부의장 그리고 10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평의회는 두 개의 부로 구성되며, 각 부는 의장 또는 부의장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두 개 부의위원은 6개월에 한번씩 추천에 의해 결정한다. 상임위원들을 위해 5명의 대리위원을 둔다. 각 대리위원들은 상임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 자신과 유사하게 임명된 상임위원을 대리한다.

제 6 조 전국신문클럽, 스웨덴기자협회, 스웨덴신문발행인협회 등은 각각 두 명의 평의회 위원과 대리위원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수석 의회 옴부즈맨과 스웨덴변호사협회 회장은 협의하여 4인의 위원과 2인의 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들은 스웨덴의 사회문제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가진 시민이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신문사나 언론단체와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된다. 위원의 임명은 적어도 위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도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의장과 부의장은 정규 법원의 판사의 경력이 있는 법률가 이어야 한다. 그들은 임기가

2년이며, 언론협회 연합위원회가 임명한다. 신문평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새로운 선거가 있을 경우 협의해야 한다. 누구도 8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을 임명한 각각의 3개 단체들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일시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임기 중에 의장은 다른 위원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 7 조 신문평의회는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의장의 감독하에 있는 사무총장은 평의회가 심리해야 할 사건들을 준비하고, 의사록을 관리하며,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신문평의회는 의장과 의장을 대리하는 위원 1인과 또는 제 6 조에 규정된 각 단체들이 임명한 대리위원, 그리고 제 6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임명된 두 명의 위원이나 대리위원 등이 참석했을 경우 결정을 할 수 있다. 평의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한다.

제 9 조 신문평의회에 제기된 심의안건과 관련된 신문사의 대표자나 그 신문사에 고용된 자는 심의과정에 입회할 수 없다.

제 10 조 심의 건에 관한 표결에 있어서 평의회의 각 위원들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결정은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한다.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 평의회의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결정에서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사건의 심리를 연장하여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원들 각각의 투표상황은 평의회 밖이나 외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리위원은 평의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가 상임위원을 대리하지 않은 경우 투표권은 없다.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평의회 모든 상임위원과 대리위원들이 참석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평의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신문사는 주당 발행부수가 10,000 부 미만인 신문사는 7,600 크루나, 10,000 부 이상인 경우는 20,700 크루나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과된 수수료는 매년 지난 1년간의 프레스 옴부즈맨과 신문평의회의 활동경비 총액을 100 분율로 환산한 비율에 따라 그 활동경비로 지급된다.

제 12 조 신문평의회와 프레스 옴부즈맨의 운영경비로 사용될 수수료는 스웨덴신문발행인협회에 납입해야 한다.

제 13 조 신문평의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신문사는 지체 없이 신문평의회의 평결문 전문을 신문의 현저한 위치에 게재해야 한다. 게재했다는 증거를 신문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신문평의회는 매년 제 6 조에 규정된 언론단체에 평의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석 의회 옴부즈맨과 스웨덴변호사협회 회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신문평의회 의장은 신문평의회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프레스 옴부즈맨에게 통고해야 한다.

제 15 조 평의회의 구성, 활동과 관련된 기본원칙의 수정은 평의회 자체나 언론협회 연합위원회가 제기하고, 수석 의회 옴부즈맨과 스웨덴변호사협회 회장과 협의하여 언론협회 연합위원회가 결정한다.

II. 프레스 옴부즈맨의 업무규정

제 1 조 프레스 옴부즈맨의 임무는 특정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갖는 개인에게 충고와 조언을 주며, 프레스 옴부즈맨 자신에게 신청된 사건이 언론인의 직업윤리

강령으로부터 이탈했는지를 조사하며,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신문평의회에 사건들을 회부하고, 여론의 형성을 통해 좀더 높은 수준의 언론윤리기준을 엄수하게 하는 데 있다.

제 2 조 프레스 옴부즈맨의 업무보조는 일차적으로 프레스 옴부즈맨보에 의한다. 프레스 옴부즈맨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프레스옴부즈맨보는 그를 대신한다. 프레스 옴부즈맨의 결정에 따라 프레스 옴부즈맨보는 일정한 신청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프레스 옴부즈맨을 대신한다. 프레스 옴부즈맨보는 프레스 옴부즈맨이 고수하고 있는 지침과 원칙을 뒤엎거나 변화시키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 조 프레스 옴부즈맨은 분쟁 초기에 조정과 충고를 통해 개인과 불리한 공표를 한 신문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프레스 옴부즈맨은 문제 신문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지체없이 정정이나 피해 당사자의 반론을 게재 할 충분한 지면을 확보해야 한다.

제 4 조 평의회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프레스 옴부즈맨은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a. 신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b. 평의회 심의를 요구한 사건은 윤리적인 원칙이나 기사가 야기했다고 생각될 손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c. 신청사건은 비교적 현재적인 이익과 관련된 기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프레스 옴부즈맨은 신청사건이 위에 언급된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그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문제의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했거나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프레스 옴부즈맨에게 신청된 사건은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전에 공표된 기사에 한해서만 심의하게 된다. 프레스 옴부즈맨은 정기적으로 그의 활동을 신문평의회 의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제 5 조 프레스 옴부즈맨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사건이나 프레스 옴부즈맨 자신이 신청한 사건은 신문평의회에 회부하기 전에 앞서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6 조 프레스 옴부즈맨에 제출된 신청사건 중 그가 기각한 신청사건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문제가 신청인과 직접 관련된 경우, 신청인 자신이 신문평의회에 불만 호소할 수 있다. 문제기사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신청인은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할 수 없다.

제 7 조 불만의 대상이 된 신문사는 프레스 옴부즈맨이 요구할 경우, 문제의 기사가 실린 신문의 복사본을 충분하게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프레스 옴부즈맨은 제 1 조 제 6 조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일반 공중에게 언론의 직업윤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와 충고는 무료로 해야 한다. 프레스 옴부즈맨은 가능한 한 기자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들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의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대담과 강연, 잡지에의 기고,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인 재교육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포함한다.

제 9 조 프레스 옴부즈맨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자는 언론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그의 언론인 경력 또한 고려대상이 된다. 프레스 옴부즈맨은 수석 의회 옴부즈맨, 스웨덴변호사협회 회장, 언론협회 연합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명한다. 그는 전국신문클럽, 스웨덴기자협회, 스웨덴신문발행인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재정지원을 받는, 프레스 옴부즈맨 재단에 의해 고용된다. 프레스옴부즈맨의 고용과 임금조건은 프레스 옴부즈맨과 재단간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프레스 옴부즈맨의 임기는 3년이다. 재단이 임기만료 1년 전에 프레스 옴부즈맨에게 통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프레스 옴부즈맨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통고하지 않은 경우, 그 임기는 자동적으로 3년간 연장된다. 통고시기에 관한 규정은 새 임기 때에도 해당된다. 프레스 옴부즈맨보는 프레스 옴부즈맨과의 협의에 따라 프레스 옴부즈맨 재단 위원회가 임명한다. 고용과 임금조건은 프레스 옴부즈맨보와 재단이 별도 계약에 의해 결정한다.

제 10 조 프레스 옴부즈맨은 재단의 이해와 동의 없이 제 8 조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임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이 지침의 수정은 언론협회 연합위원회가 한다.